



농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32호
------	-------

**논산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2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과장

1. 제안이유

- 가. 환경부령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질검사 결과 보존 기간 명시
- 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직권 폐지 사유 규정

2. 주요내용

- 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수 수질검사 결과 5년간 보존
(안 제6조제1항)
- 나.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직권 폐지 가능(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기획감사실-11509호(2023. 10. 27.)]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32449호(2023. 10. 30.)]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1939호(2023. 10. 13.)]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1.(화)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041-635-4480)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로”를 “제7조에서”로, “3년간”을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검토하여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지방상수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
2.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3.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소규모수도시설

② 제1항 단서와 같이 시장이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 시장은 협의회에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상 하 수 도 과 장 윤 기 암
안	상 수 도 팀 장 김 창 배
자	담 당 자 김 영 재 (746-638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u>3년간</u>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u>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6조(수질검사) ① ----- ----- ----- ----- 제7조에 선 ----- ----- ----- 원수는 5 년간, 정수는 3년간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u>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방상수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u> 2. <u>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u> 3.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

<p>② 제1항 단서에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의 폐지는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u>질기준에 부적합한 소규모수도시설</u></p> <p>② 제1항 단서와 같이 시장이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 시장은 협의회에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상하수도과장 윤기암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 지침

35쪽 6)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

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수질기준 초과 사례 등이 발생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 시설 폐쇄 및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